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18 발의연월일: 2021. 10. 28.

발 의 자:김교흥・김수흥・김승원

김윤덕 · 김진표 · 맹성규

박상혁 · 송옥주 · 앙이원영

윤미향 • 이상헌 • 임호선

조정식 · 천준호 · 허종식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~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.

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, 경비원 등 근로 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53조제1항).
- 나.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함(안 제90조제7항 신설 및 안 제98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7호 또는 제8호"를 "제7호, 제8호 또는 제9호의2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
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에 제7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(용역업자 포함)는 관리사무소장,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관리업의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3조(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	제53조(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			
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	등) ①			
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				
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				
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				
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				
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				
제1호,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				
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				
소하여야 하고, 제7호 또는 제8	제7호, 제8			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	호 또는 제9호의2		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				
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				
여야 한다.	<u>.</u>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9의2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			
	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			
	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			
	<u>공한 경우</u>			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	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	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	

제90조(부정행위 금지 등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

제9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제90조(부정행위	금지	등)	1	~
⑥ (현행과 같음	<del>(</del> -)			
⑦ 입주자대표회	티의외	. 주	택관	리
업자(용역업자	포함)	는	관리	사
무소장, 경비원	등 근	구로ス	l의	고
용과 관련하여	금품	수수	등	부
당한 이익을 취	부득하	거나	· 제	공
하여서는 아니	된다.			
제98조(벌칙)				
				. — —
				. — —
1. ∼ 3. (현행고	나 같음	$\left(\frac{1}{1}\right)$		
4. 제90조제7항	을 위	반히	-여	금
품수수 등 부	당한	이인	을	취

득하거나 제공한 자